

## 2024 Bestlo 헌법 기출총정리(제6판) 정오표 (2023. 8.22 기준)

p300 141문

정답 수정 ③ → ②, ③

해설 ② 수정 [×] 단지 강제퇴거명령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행정목적 때문에 기간의 제한이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과 확실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행정절차상 강제처분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강제처분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박탈에 이르러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그 집행기관인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이 보호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보호를 하는 경우에도 피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보호명령을 발령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러므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23. 3. 23. 2020헌가1).

p345 214문

정답 수정 ③ → ①, ③

해설 ① 수정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23. 3. 23. 2020헌가1).

p303 147번 설문 오탈자 수정

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p487 392번 정답표시 수정

① ⇨ ④

p574 500번 ② 해설 정오표시 수정

[○] ⇨ [×]

p724 145번 ㉔ 해설 마지막 줄 내용 수정

그러나 피소추자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는 사직할 수 있다(국회법 제134조 제2항).

p739 165번 ④ 해설 내용 대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법 제29조 제1항).

p755 181번 ② 해설 둘째 줄 내용 수정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지만,~ ⇨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p784 220번 ㉠ 해설 보강(판례 추가)

위헌법률심판 또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이고 그 밖에 조약 등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된다. 여기의 '법률' 인지 여부는 그 제정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규범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제76조 제1항) 및 긴급명령(제76조 제2항)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제6조)의 위헌 여부의 심사권한도 헌법재판소에 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3.3.21. 2010헌바132등).

p873 340번 ①, ② 해설 내용 수정

- ① [○]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법원조직법 제41조 제3항).
- ② [○]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

p905 379번 ④ 해설 정오표시 수정